

39. 생식선방사선방어용기구

1. 적용범위

이 기준규격은 생식선에 노출되는 방사선을 방어하기 위한 기구에 적용된다.

2. 구조

방어용 기구는 균일한 납 당량을 가진 본체와 사용자의 몸에 맞게 조절하여 착용하게 할 수 있는 조절 장치로 구성될 수 있다.

3. 기준

시험항목	시험기준	시험방법
외형	상처나 손상을 초래할 만한 외관상의 흠, 파손, 요철, 예리한 가장자리 등이 없이 매끄러워야 한다. 다만 표면처리가 된 경우에는 불규칙하게 코팅된 부분, 벗겨진 부분, 갈리진 부분 등이 없어야 한다.	4.가.
치수	제품의 치수는 제조자가 설정한 기준 값의 $\pm 5\%$ 이내여야 한다. 단, 제품의 특성상 그 타당성을 증명하는 경우 제조자가 허용오차를 설정할 수 있다.	4.나.
방사선차폐	전체 영역에서 0.50mmPb 이상의 납당량을 만족시켜야 한다.	4.다.

4. 시험방법

가. 외형 시험

육안으로 관찰하여 표면 및 가장자리에 대한 준수 여부를 판단한다. 다만, 표면처리(코팅, 도금, 도장에 한함)된 의료기기 또는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조명 및 확대 기구를 이용할 수 있다.

나. 치수 시험

곧은자, 버니어캘리퍼스, 디지털 게이지 등 교정된 측정 기구를 사용하여 측정한다. 단, 측정단위는 기준 값의 범위 이하여야 한다.

다. 방사선차폐 시험

납당량 시험은 KS A 4025(X선 방어용품류의 납당량 시험 방법)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.